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Global Market Report

CONTENTS

목 차

요 약	/11/
<hr/>	
I. 디지털 무역의 확산	/31/
<hr/>	
1. 디지털 무역 정의	
2. 디지털 무역 확산 동향 및 기회·도전요인	
II.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71/
<hr/>	
1.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 필요성	
2. 글로벌 논의 동향	
III.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111/
<hr/>	
1.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3. 디지털세 도입	
4. 새로운 무역패턴에 대한 규범 마련	
IV. 시사점 및 우리기업 대응	/241/
<hr/>	
1. 시사점	
2. 우리기업 대응방향	

요 약

- (정의)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 일반적으로, 기존 전자상거래(상품 중심)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
- (변화) 전자상거래가 지속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
 -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물인터넷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
 - '무역 플랫폼의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형태로 변모
- (기회 및 도전) 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기회와 도전 요인을 동시에 가져옴
 - (기회) 디지털 인프라·서비스 접근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및 개도국들의 교역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미래 먹거리 다양화
 - (도전) 소비자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우려 존재하며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 긍정적인 요인은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 마련 필요
- (논의동향)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WTO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OECD, UN 등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시
 - 한편, 미국, EU, 일본 등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무역협정의 협상 안건에 포함

- (쟁점) 기존 전자상거래 이슈인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이슈와 더불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디지털稅 도입', '새로운 무역 패턴 규범 마련' 등 신규 이슈가 쟁점화
 -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디지털 무역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할 지 여부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증가
 - (디지털稅 도입) 현행 과세체계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 부재
 - (새로운 무역 패턴에 대한 규범 마련)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하여 교역 플랫폼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교역 형태 자체의 변화가 예상
- (주요국 입장)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
 - (미국) 첨단기술·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구글·아마존 등 자국 기업들의 전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 정부의 규제 최소화 집중
 - (EU) 협소한 개별시장 한계극복 및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역내 단일시장화 추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대외 개방에는 소극적
 - (중국) 7.7억명 인터넷 인구(미국의 2배) 대상 독자적 시장·규제체계 유지 희망, 대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제한적 관심
 - (기타) 일본·호주 등은 해외진출 여건 개선 위한 규제 최소화 입장지지, 인도·남아공 등 개도국은 기술격차 해소, 세수 확보 위한 규제 권한 보유 희망
- (대응)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상 규범들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특히,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조치',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 '디지털세 도입'은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긴밀한 대응 필요

1. 디지털 무역 정의

-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최근 국제기구(OECD·WTO 등)에서 ‘디지털 무역’ 관련 용어를 사용하며 논의가 진행
 - 기존에는 ‘전자상거래(e-commerce)’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통상 규범 논의를 진행해 오다가 2000년대 이후 ‘디지털 무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 디지털 통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디지털 무역은 기존 전자상거래와 비교하여 광범위한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디지털 무역을 “인터넷과 인터넷 기반 기술이 주문, 생산, 또는 제품과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내 거래 및 국제 무역”으로 정의
 - * 기존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미국 내 및 국제 무역’으로 정의하여, 무형 재화의 거래는 제외
 - 또한 상품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수단인 데이터 역시 디지털 무역의 범주에 포함
- 결론적으로,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디지털무역의 주요 유형별 사례로는,

- (전자상거래) 의류 판매 등 물리적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거래
 - *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알리바바(alibaba) 등 인터넷쇼핑몰
- (디지털재화) 인터넷으로 전송 판매가 가능한 시청각 스트리밍(영화, 음원 등) 등
 - * 유튜브(youtube), 넷플릭스(netflix), 훌루(hulu) 등 OTT(Over The Top) 기업
- (국경간 정보이전) 비즈니스나 기타 행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미디어(SNS)·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국경간 이동
 - *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 아이클라우드(icloud) 등 클라우드컴퓨팅

< 유형별 대표 글로벌 디지털 기업 >

전자상거래 (타입 A)			
디지털재화 (타입 B)			
국경간 정보이전 (타입 C)			

*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디지털 무역은 온라인을 통한 상품거래뿐만 아니라 시청각 스트리밍·검색엔진·소셜미디어(SNS)·공유경제 등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이동 등을 포괄

□ 한편, 디지털 재화를 상품으로 분류할지 서비스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

-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형태의 경우는 상품,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
 - *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e-book을 구입해 다운 받을 경우 이는 출력을 통해 물리적 변환이 가능하므로 상품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나, 인터넷 홈케어 서비스로 의사의 처방을 파일로 전달 받았을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 변환은 가능하나 상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2. 디지털 무역 확산 동향 및 기회 · 도전요인

가. 디지털 무역의 확산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가 '17년 전후를 기점으로 2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큰 폭으로 상승
 - 2018년 전자상거래 이용자 18억 명의 57%가 해외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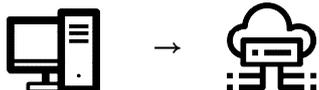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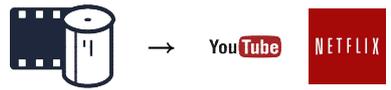
< 전세계 무역규모 및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십억달러) >

구분 /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세계 무역규모 (OECD, 16.11)	21,859	22,421	22,839	23,501	24,253
전자상거래 전체(B2C) (eMarketer, 15.11)	1,471	1,548	1,915	2,352	2,860
국경간 전자상거래 (Ali Reserach, 15.6)	233	304	400	530	676

-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1위·2위이며 한국은 5위 규모 (UNCTAD)
 - * 국가별 규모(B2B+B2C, 단위: 조불) : (①미국) 6.6(28%) → (②중국) 2.7(12%) → (③일본) 2.5(11%) → (④독일) 1.0(4.6%) → (⑤한국) 1.0(4.6%)
-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전자상거래(B2C 기준) 규모는 113.7조원으로 '14년 45.3조원에서 약 2.5배 증가하며 급속 성장
- 전세계 ICT 기반 서비스(ICT-enabled services)*는 '08년 1.86조불에서 '18년 2.96조불로 지난 10년간 약 1.6배 증가 (WTO)
 - * ① 통신 ② 보험 ③ 금융 ④ 컴퓨터 및 정보 ⑤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수료 ⑥ 기타 업 서비스 ⑦ 개인, 문화, 위락 서비스로 구성되며 운송 서비스는 제외
-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변화를 가져오며 새로운 디지털 무역의 영역이 등장
 -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물인터넷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제조업과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
 - * 세계 인구 77억의 5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33억 명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용중 (Global Digital Report 2019, 2019년 1월 기준)

-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가 출현하는 등 비즈니스 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무역패턴이 등장

<변화되는 무역패턴 예시>

① 기존에 없던 데이터 교역	② IT 하드웨어→데이터 서비스	③ 디지털 제품→스트리밍 서비스
		
3D 모델링 파일을 전송받아 3D프린터로 출력	컴퓨터 서버 판매 →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	필름·CD →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감상

나. 디지털 무역의 기회·도전요인

- (기회요인) 디지털 인프라·서비스 접근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중소·중견 기업 및 개도국들의 교역 참여기회가 확대

* '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57%)

- 교육·회계·진료 등 기존 비교역재로 인식되던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국경간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무역을 통한 미래 먹거리 다양화

* 서비스무역 비중(WTO) : ('16) 21% → ('30) 25%(디지털기술 영향 반영시)

-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조성하여 혁신성장 유도 가능

- (도전요인) 소비자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교역 대상·방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통상 규범은 미비

- 2019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데이터 유출 및 사이버 공격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

* 2018년 세계 16개국에 거주하는 인터넷 이용자 12억 명 중 8억 명이 바이러스나 보안 위협, 아이디와 패스워드 도용 등 사이버 범죄를 경험(Norton 2019)

* 2005년 이후 미국 내 데이터 유출 사례만 8,804건

- 한편, 새로운 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서버 현지화,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의 이슈를 두고 선진국-개도국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

1.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 필요성

- 전통적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무역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이로 인해 무역의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형태로 변모한다는 것
- 이로 인해 기존 전자상거래 이슈인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이슈와 함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세 도입’ 및 ‘새로운 무역 패턴 규범 마련’ 등 신규 이슈가 등장
 -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디지털 무역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는 한편으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를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를 논의로 확장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나 그로 인한 정보 보안 위협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증가
 - 데이터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입장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
 - (디지털세 도입) 현행 과세체계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는 데 한계
 - 디지털 기업의 초국경적 영업활동에 대한 과세 비율이 전통적 제조업 대비 현저히 낮아 법인세율 불공정 경쟁 논란 발생
 - (새로운 무역 패턴에 대한 규범 마련)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하여 교역 플랫폼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교역 형태 자체의 변화가 예상
 - 기존 WTO 체제의 협정에는 이러한 혁신 비즈니스에 대한 규범과 체계가 미비하여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우려

2. 글로벌 논의 동향

- (국제기구) 디지털 무역의 국제기구 논의는 주로 WT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UN, OECD 등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 (WTO)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채택(‘98년 9월)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논의 시작 후, 제 11차 각료회의(MC-11) ‘전자상거래 공동성명’(17.12월)을 통해 ‘데이터 이전’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여 협상개시(19.5.13)
 -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채택 이후 논의가 별다른 진전이 없자 MC-11 이후에는 제12차 WTO 각료회의(20.6월)시 의미 있는 성과 도출(commercially meaningful outcome)을 목표로 ‘19.11월까지 총 6회 협상 진행(현재 81개국 참여 중)
 - 데이터/서버 로컬화 금지 등 자유화 요소와 함께 소비자 보호 규제 협력, GATS 서비스 양허 개선, 개도국 역량개발 등이 논의 중
 - (OECD) ‘80년대부터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5년 이후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 * 디지털세는 관세가 아닌 법인세 이슈이므로 OECD에서 주도적으로 논의
 - (UN) UN 산하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들의 통일을 위한 모델법 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자적 국제통상규범을 확립코자 노력
 - *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통일을 위한 모델법’ 제정(‘96.5월), ‘전자서명 통일규칙에 관한 모델법’ 제정(‘01년),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모델법’ 제정(17.7월) 등
 - (APEC) 정보통신 실무그룹(‘90년), 전자상거래 운영그룹(‘98)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01년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프레임워크를 발표
 - 주요 논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인터넷 보안, ICT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 하지만 WTO를 제외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는 현재까지는 모델법 제안 등 단순 지침에 불과하기에 이를 자국법에 반영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한계 노정

- (무역협정) WTO 체제가 통일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협정에서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중
 - 미국 주도 무역협정(한-미 FTA, CPTPP, USMCA)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EU, 일본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을 서비스 무역에 포함한 무역협정 체결(EU-일본 EPA)
 - (한-미 FTA) 일반적인 국경 간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강조 조항
 - (CPTPP, USMCA)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전 보장,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금융정보의 전자적 전송 허용 조항 등
 - (EU-일본 EPA) 비밀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금융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허용, 지적재산권 챕터에서의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 조항 등
 - 한편, 미-영 자유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디지털 무역 로드맵을 제시

< 미국-영국 무역협정 로드맵 >

(A Policy Roadmap for U.S.-UK Digital Trade, '19.11월)

-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한도에서 디지털 무역 챕터의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
- 미국과 유럽 간 데이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마련
- 자율자동차, 드론, 3D 프린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공통 기술 규범 마련 및 시행
- 미국-영국 기술 규제 완화 샌드박스(U.S.-U.k. tech sandbox) 구축
- 중소기업의 디지털 무역 성장을 위한 미·영국 중소기업 포럼 추진
- 미·영 디지털무역협의회 설립 통해 디지털자유무역협정 이행 검토
- 디지털 무역 관련 법제가 업계에 미치는 실질 영향 분석
- 'D9* (Digital 9+ Frontrunners)'과의 긴밀한 협력 추진
 -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 USMCA-영국 디지털 무역 블록 형성
- WTO 전자상거래 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 노력
-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위한 혁신 기술 내수 산업 육성

- (주요국 입장)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 하나 대외 개방은 소극적,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
 - (미국) 첨단기술·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구글·아마존 등 기업들의 전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 정부의 규제 최소화에 집중
 -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영구화,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요구, 디지털세 도입 반대,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 요구
 - * 외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시 매년 미국 실질GDP 0.3%, 임금 1.4% 상승, 일자리 40만개 증가 효과(미 의회 보고서)
 - (EU) 협소한 개별시장 한계극복 및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역내 단일시장화 추진, 대외 개방에는 소극적
 - 역내 디지털 규범 통일 추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화 지지, 소비자 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 이전 자유화 찬성, 디지털세 도입 요구
 - * 역내 전자상거래(배송/결제/반품 편의성 및 부가세 간소화), 통신서비스(주파수 조정, 로밍 국내요금화, 망중립 등), 개인정보보호 활용체계 통일(GDPR(정보보호일반법)) 등
 - (중국) 7.7억명 인터넷 인구(미국의 2배) 대상 독자적 시장·규제체계 유지 희망, 대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제한적 관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전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 시행, 특정 웹사이트 차단, 데이터 저장설비 현지화 등 디지털 무역장벽 조치 시행
 - * 자국 인터넷 규제권한 존중 필요 →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세계 상위 트래픽 25개 중 8개 사이트를 막고, 자국 기업을 육성
 - (기타) 일본·호주 등은 원활한 해외진출 여건 위한 규제 최소화 입장지지, 인도, 남아공 등 개도국은 기술격차 해소, 세수 확보 위한 규제 권한 보유 희망
 - (일본, 호주)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화지지 및 디지털 무역장벽 반대 입장
 - (인도, 남아공)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화 재검토 요구,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요구

1.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 (주요쟁점) ‘전자적 전송물’이 디지털 무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 부과 가능성 및 부과 필요성이 국제 사회의 핵심 논의 사안으로 부상
 - * ‘전자적 전송물’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송신 또는 수신하고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
 - 전자적 전송물은 유체물이 아니라 전자적으로도 전송될 수 있는 ‘무체물’이라는 점에서 관세 부과를 두고 국별 입장차가 발생
 - 전자적 전송물을 ‘무형화된 상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무형의 교역 대상이므로 서비스로 보아야하는지 혹은 제3의 새로운 영역으로 분류할지에 따라 관세 부과 방식의 차이 발생
- (논의경과) ‘98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시적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최근 2017년 제 11차 각료회의(MC11)에서도 무관세화를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최초 제안) ‘98년 2월, 미국 대표가 WTO 일반이사회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를 법규화 하는 것을 제안
 - (무관세 결정) ‘98년 5월, 제2차 각료회의(MC2, 제네바)에서 WTO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당시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결정
 - (무관세 지속) 이후 각료회의를 통해 무관세 선언을 지속
- (최근동향)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를 영구화해야한다는 입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
 -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화 연장 여부와 더불어 디지털 재화의 분류 기준 (상품 vs 서비스)이 주요 쟁점
 - * 전자적 전송물을 무형의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입장(미국)과 전송되는 재화의 성격보다 전송 수단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로 분류하자는 입장(유럽)으로 대립

- (주요국 입장) 대다수 선진국들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재화 무관세화를 찬성하나 개도국을 비롯 일부 회원국에서는 반대
 - (미국)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영구화를 주장하고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
 -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인터넷상에서 과세의 기술적 난해함 등을 이유로 디지털 재화에 대한 무관세관행의 영구화를 주장
 - 또한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강력한 자유화적 무역규범의 적용을 주장
 - *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으로 분류할 경우 상품협정(GATT)이 적용되어 규제의 적용 등 개별국의 정책에서 자유로움
 - (EU) 무관세를 지지하나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반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관세를 유지하기를 희망
 - 단, 디지털 재화를 상품보다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미국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역내 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 확보 희망
 - * 전자적 전송물을 서비스로 분류할 경우 서비스협정(GATS)이 적용되어 당사국 정부의 정책 활용도 증가
 - (일본·호주)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화 지지
 - 디지털 역량은 있으나 독자 시장은 협소하여 해외진출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화 등 디지털 무역 자유화 조치 요구
 - (개도국 등) 무관세관행에 대해 재검토 요구
 -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관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로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화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
 - * “1998년 최초로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화가 합의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상황이 변한 만큼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이 밖에도 싱가포르, 브라질 등 일부 회원국도 전자적 전송물에 내국세,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를 희망

2.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 (주요쟁점) 디지털 무역을 통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입장과 개인 정보 등 소비자 보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의 대립
 - 데이터가 국경 간을 자유롭게 이동해야 한다는 점은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이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
 - 최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련 이슈는 ① 데이터 국외 이전의 제한, ②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③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 이전 여부 등으로 구분 가능

- (국제기구)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이후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에 참가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이전의 자유화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음
 -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이는 무역관련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복잡한 이슈이므로 WTO 차원의 새로운 규범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립
 - '19.11월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특히 미국과 EU의 입장차가 뚜렷하여 향후 논의 방향을 고려하면 큰 고민
 - * (미국) 국경 간 자유로운 정보의 이전을 강조 (EU)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주장하며 신중한 접근

- (무역협정) 한편, WTO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미국, 일본 등은 양자·다자 협정에서도 데이터 규제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고 있음
 - '18.9월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합의한 USMCA의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도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 조항이 확인
 - 일본 주도로 체결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CPTPP) 협정은 회원국 사이에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명시한 의무규정을 포함

□ (주요국 입장) 사안별로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글로벌 통상규범 마련 난항

① 데이터 국외 이전의 직접적 제한

- (미국)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한 제한 조치를 철폐하자는 입장
 - 매년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에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제한 조치를 포함
 - 전자적 수단을 통한 소비자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금지를 명시하나,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 인정
 -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맥락에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조치는 드러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수준에서 비례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
 - 한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주요 ICT 기업들은 GDPR(일반개인정보 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대외 정보보호 강화 정책에 대비하여 사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IT 컴플라이언스를 정비하며 긴밀히 대응

< 美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GDPR 대응 현황 >

기업명	대응 현황
	사용된 정보주체의 정보 투명성 향상, 사용자 통제권 향상, 정보이동성 향상, 미성년자 대상 부모의 동의절차와 도구 개선, 사업 고객·파트너 지원,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위한 IT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정확한 개인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 프로필 공개설정과 별도로 정치성향·종교 등 민감정보 사용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 얼굴 인식 기술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기회의 지속적 제공과 정보접근·삭제·다운로드 도구 향상 및 10대 이용자 보호 장치 등
	개인정보 수집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즉각 알림 기능 추가, 사용자가 직접 자기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는 사이트 제공(Apple ID Data & Privacy), 사용자가 애플에 자기정보의 정정·삭제·열람·이동 요청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EU) 기본적으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찬성하지만, 소비자 정보 보호에 방점

-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나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할 시에는 교역상대국이 '적정한 보호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금지

*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① 제3국이 적정성 결정(decision)을 획득한 경우, ②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기업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갖춘 경우로 제한

- 디지털 무역을 위해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만 이동하는 데이터에 소비자 정보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으며, 미국과 달리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권(fundamental right)으로 규정

- 또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 한편, 최근 프랑스, 영국 등 EU의 주요 회원국들은 '18.5월 GDPR 시행 후,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물론 브리티쉬 항공,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등에도 거액의 벌금 부과

< GDPR 위반에 따른 벌금 사례 >

- * (구글)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로부터 GDPR의 '투명성(제5조 개인정보 처리원칙)'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만 유로(약 653억 원)를 선고('19.1월)
- *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100만 유로(약 12억 7,000만원, '18.12월), 영국으로부터 50만 파운드(약 7억원, '18.9월)의 벌금을 부과 받음
- * (브리티쉬 항공) 영국 정부는 5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브리티시항공에 대해 2억3000만 달러 (약 2,700억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19.7월)
- *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5억 명의 고객 정보 유출로 영국의 정보위원회(ICO)로부터 1억 2,400만 달러 (약 1,460억원)의 벌금을 부과 ('18.11월)

○ (중국) 데이터 이전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 시행중

- 중국은 WTO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언급
 - * 중국이 데이터 이동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현재 중국이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
- '17년 6월에 발효된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핵심 정보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중국 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여야 하며 이전을 희망할 시에는 보안평가를 받도록 규정
 - * 공공통신과 정보, 에너지,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의 중요 산업과 데이터가 유실 되면 국가안전, 국민경제생활, 공공이익에 피해가 큰 핵심정보 기반시설

② 데이터 저장설비의 현지화와 소스코드 공개 금지

○ (미국) 데이터 저장설비의 현지화 반대, 소스코드 공개 금지 입장

- WTO에 컴퓨팅 시설의 위치 제한 금지,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소스코드에 담긴 알고리즘에 대한 이전/접근 요구 금지를 제안
- '18년 10월 타결된 USMCA 협정문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대상인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의 조건으로 당사국의 영토 내에 컴퓨팅 설비를 이용 또는 위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제32.1조 제2항)
- 미국 다국적 디지털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마다 데이터 저장 센터를 별도로 지을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

○ (EU) EU 차원에서 자국 내 서버를 둘 것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회원국에서 데이터 저장설비의 현지화 정책을 추진했던 사례 존재

- * (프랑스) '16년 5월 프랑스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디지털 법안'에서 '데이터는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 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야 하며 제3국 이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
- * (독일) '15년 5월 정부 데이터를 독일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클라우드 인프라시설 설치 계획을 발표

- (중국) 데이터 저장설비 현지화 조치 보유 및 소스코드 공개 요구
 - 사이버보안법 제37조에 핵심정보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중국 내에서 운영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 내에서만 저장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데이터 저장설비의 현지화 추진
- (기타) 일본 등은 데이터 저장설비 현지화에 반대, 러시아 등은 현지화 조치 시행
 -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은 WTO에 데이터 저장설비의 현지화와 소스코드나 소프트웨어의 강제적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며 미국과 같은 취지의 제안서 제출
 -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 국가는 자국 데이터와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데이터 저장설비 현지화 조치 시행
 - * 단, 러시아(데이터 현지화 조치국)는 WTO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중국과 달리 데이터 설비 현지화 조치나 소스코드 공개 금지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 드러낸 바 없음

③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 (미국) 정보 제공 주체 동의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입장
- (EU)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 정보 이전이 가능하도록 GDPR 제 49조*에 규정
 -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을 때도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
- (중국) 사전 동의에 따른 정보 수집 및 정보 제공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특정 정보는 정보 제공 주체 동의시에도 국외로 이전 제한
 -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누설, 왜곡, 훼손하지 못하고, 피수집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제42조)” 라고 규정하여 사전 동의에 따른 정보 제공 가능성을 제시
 - 단, 여기서 ‘제공’이란 국내 제공만을 포함하며 국외로의 처리위탁 등에 대해서는 동 법 제67조에 따라 핵심정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

3. 디지털세 (Digital Tax) 도입

- (등장배경) 다국적 디지털 기업이 국외에 서버를 두고 소비지국에는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매출을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이전하여 법인 소득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문제 발생
 - 기존의 법인세 체계로는 디지털 기업들의 과세소득 산정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제조기업 대비 매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 EU 내 법인세 실효세율은 전통적 다국적 기업 23.2%, 디지털 기업 9.5%이며 (EU집행위) 글로벌 IT 기업의 절세 규모는 연간 1,000억 달러~2,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OECD)
 - 디지털세의 주요 대상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주류 디지털기업으로 EU는 자국의 디지털 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멕시코, 인도 등 신흥국은 과세 수익을 목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고려
- (논의경과) 현재 OECD와 EU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 중
 - * OECD는 장기대책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EU는 회원국간 단기대책 합의를 추진
 - (OECD)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15년부터 OECD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세는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
 -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 ('15년 권고안 발표) 디지털 경제가 국가의 과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경제적 실재를 고려한 새로운 연계점, 균등 부과 등을 권고
 - ('19.5월) 성과보고서를 통해 두 가지 과제 제시
 - . (과제1) 새로운 과세 연계점과 이익배분 규칙을 제시하여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 배분 제안
 - *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매출액이 발생한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해주기 위함
 - . (과제2) 글로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을 넘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
 - *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특정소득이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 소재국이 아닌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 부여하여 조세회피 방지

- (EU) EU집행위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발표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하여 최근 개별국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중
 - ('18.3.21, EU집행위 법안 발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한 단계별 과세 계획을 담은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하여 '20.1.1일 부터 회원국에 적용 요구

< EU집행위의 디지털세 단계별 도입 방안 >

- ① (중장기 방안: 법인세 개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법인세 체계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개념 도입
 - EU 역내 주요 디지털 사업장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 수익, 사용자 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계약건수 등을 기준으로 디지털세 부과
 - * ① (공급수익) EU 역내에서 7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② (사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용자 보유하거나 ③ (계약 건수) 3,000개 이상의 계약을 맺은 기업
- ② (단기 방안: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법인세 개혁 통한 디지털세 도입되기 전까지 연매출의 약 3% 세율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 부과
 - (과세대상) 연간 총수익이 7억 5천만 유로를 상회하고 EU 역내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
 - * 사실상 미국의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가 대상

- ('19.3.12, EU집행위 법안 부결) EU 28개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의결 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부결
 - * 재정관련 사안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이 반대
- (일부국 개별 입법)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찬성했던 영국, 프랑스에서 개별국 차원의 입법을 통해 단기 방안으로 제시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추진
 - * (프랑스) EU 회원국 중 최초로 '19.7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하여 '19.1월 매출액 부터 적용코자 했으나 미국이 보복관세 조치에 나서면서 '20.12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
 -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20.1월), 영국('20.4월)도 디지털서비스세 시행

□ (최근동향)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발표 ('20.1월)

- 디지털세를 2가지 접근법(2 Pillar Approach)으로 구분하였으며 P1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에서도 과세권 배분기준을 도입하고 P2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게 목적
 - (P1: 과세 연계)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기준 제시
 - * EU 집행위의 디지털세 법안 내 증장기 법인세 개혁 방안의 '주요 디지털 사업장' 과세 부과 입장과 동일
 - (P1: 적용 대상) 디지털서비스사업(SNS, 검색, 광고, 중개 등)과 함께 소비자 대상사업(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등)을 포함 (미국의 입장 반영)
 - (P1: 배분 방식) 글로벌 이익에서 통상이익을 초과한 이익의 일부를 시장 기여분에 대항하는 금액을 도출하여 배분 기준에 따라 국가별 배분
 - (P2: 최저한세율)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서 특정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 부여
- 한편, OECD는 '20.7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디지털세의 과세율, 과세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과세안 확정하고 '20년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

□ (주요국 입장) OECD 합의안에는 미국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최종 합의가 무산될 경우 EU는 디지털세 도입 재추진 의사

- (미국) OECD 합의안 협상을 통해 자국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장
 - * 美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OECD 합의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 의사 표명 ('20.3.3일)
-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글로벌 디지털 기업 또한 진출국 내 법인세 납세 규모를 늘리는 등 각국 정부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

< 美 글로벌 디지털 기업(GAFA)의 디지털세 자진 납세 움직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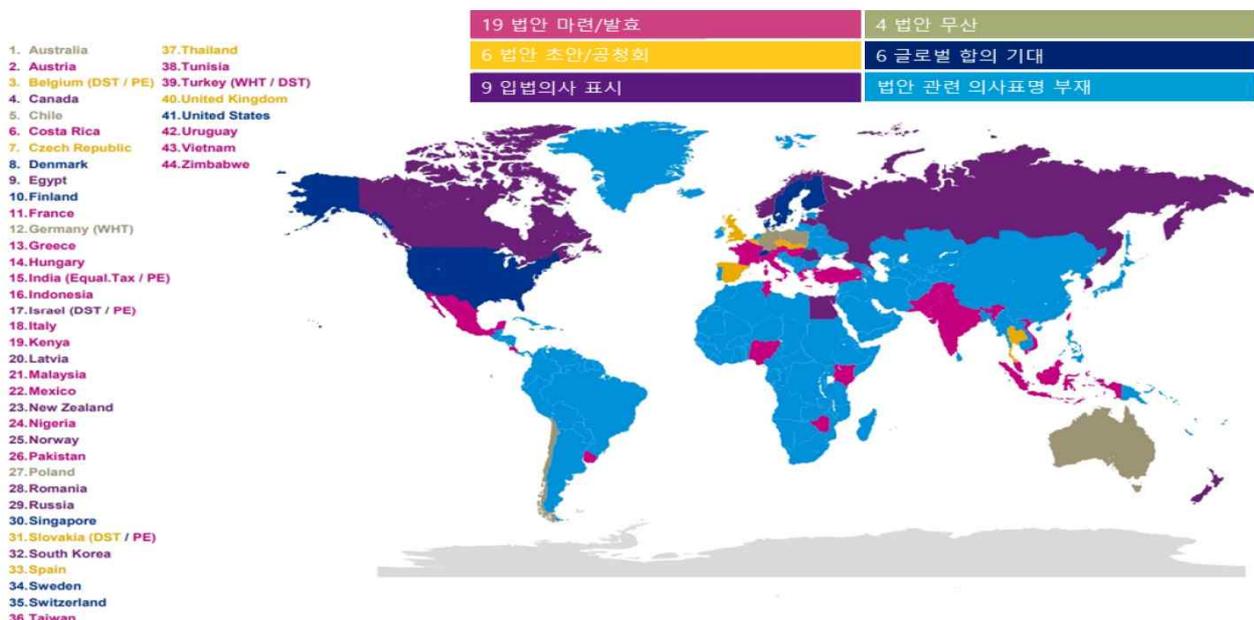
- * (Google) 기존에 싱가포르 법인에서 체결해 왔던 일본 광고 계약을 일본 법인에서 직접 체결하기로 결정('19.4월)
- * (Apple) 프랑스 과세당국과 과거 10년분 법인세 5억 유로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합의('19.2월)
- * (Facebook)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현지 법인을 통해 신고하겠다는 입장 표명('17.12월) 후 한국내 광고 매출을 페이스북 코리아를 통해 신고하기 시작('19.12월)
- * (Amazon) 기존에 미국 법인에 계상했던 일본 내 판매액을 일본 법인인 아마존 재팬의 매출에 계상하며 2017~18년 법인세 300억엔 납부('19.12월)

○ (EU) OECD 최종안이 올해 안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세 도입 재추진 의사

-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집행위 산업정책 담당관은 OECD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EU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또한 OECD 최종안 도출이 실패할 경우 EU 차원에서 제시된 단기 방안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한편,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디지털세의 시행 또는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 또한 OECD차원의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개별 국가 차원의 조치를 중단하고 OECD 합의 사항에 따를 전망

【 글로벌 디지털세 추진 현황 ('20.1월 기준)】



* 자료원 : KPMG(2020)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재구성

4. 새로운 무역 패턴에 대한 규범 마련

- (주요쟁점) 디지털 무역은 최근 발전된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하면서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 등에 논란 지속
 - (플랫폼 사업자 책임 문제)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전달, 공유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플랫폼사업자에게 있는지 콘텐츠 제공자에게 있는지 여부
 - (3D 프린팅 과세 및 규제 권한) 유형인지 무형인지 정립되지 않은 형태의 설계를 기반으로 유형의 물리적인 상품을 제조하는 방식에 대한 과세 및 규제 권한 가능성

- (국제기구) 아직까지 WTO에서 직접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범을 논의한 적은 없지만, 회원국들은 의견서를 통해 '디지털 무역' 현상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논의 개시 필요성에 공감
 - WTO 전자상거래 작업반에서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평후·킨멘·마츠 개별관세지역*은 구체적으로 3D 프린팅이 어떻게 물리적 공간에서의 무역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대만이 '04년 WTO 회원국 가입 시 사용한 국가명
 -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3D 프린팅으로 인하여 전자적 전송물이 물리적 상품 제조 과정에서 중대하게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자적 전송물이 상품을 대체하여 거래될 수 있음을 시사
 - (대만·평후·킨멘·마츠 개별관세지역) 3D 프린팅은 전자적 전송물 형태로 전송되는 CAD 파일에 대한 무관세로 인하여 새로운 무역모델과 전통적 무역모델 간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
 - 한편, 기존 WTO 협정상 규범은 새로이 등장하게 될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를 규율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아 WTO에서 향후 이러한 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무역협정) TISA, USMCA 등 일부 FTA에서는 미국의 제안으로 클라우드 및 공유서비스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도 관련 되는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규범'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논의 시작
 - (TISA)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 내에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관련 규범 논의가 포함
 - (USMCA) TISA에서 미국이 제안했던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규범'을 양자 무역협정에서 최초로 포함

- (주요국 입장) 미국은 자국내 플랫폼 사업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반대, 타 국가에서는 법적 책임 부과 허용 또는 판단 유보 입장
 - (미국)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해당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를 금지하자는 입장
 - USMCA 협정에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사용자가 전체/부분적으로 정보를 만들고 발전시키지 않는 한 정보의 저장, 가공, 전송, 또는 이용하게 함에 있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 있도록 규정(제19.17조 제2항)
 - *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콘텐츠제공자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게시하였다고 하여 해당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제공자인 유튜브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것
 - (EU)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허용 입장
 -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상 유통되는 콘텐츠가 유해하고 불법적인 콘텐츠임을 자각할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법적 책임이 존재하며, 이러한 콘텐츠의 유통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
 - (캐나다) 국내법상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이는 통상 규범 논의 대상이 아닌 국내법상의 이슈로 봐야한다는 입장
 - (기타) 이스라엘, 호주, 페루 등은 이러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유보적 입장

1. 시사점

-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획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新 글로벌 통상규범 마련 필요
 - (기회) 무역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손쉽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합류, 새로운 무역 패턴의 등장으로 무역활성화
 - (도전) 디지털 무역의 초국경성으로 특정 국가가 가지는 규제 및 과세권한 무력화, 데이터 이전 확대로 개인정보 등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
 - 긍정적인 요인은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 마련 필요

- WTO, OECD 등 국제기구 논의 및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규범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가 간 합의 난항으로 지연 가능성
 - (규제완화 입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유지(미국)와 해외시장 개척(일본, 호주)에 유리한 여건 조성 위해 규제 최소화에 집중
 - (규제유지 입장) 역내 단일시장화·자국기업 보호(EU), 독자적 시장 유지(중국), 기술격차 해소 및 세수 확보(개도국) 위해 규제 권한 보유 희망
 - 정부는 우리 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와 제도 선진화 필요

- 특히, 동 보고서에서 통해 언급한 쟁점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쟁점화 되면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
 - 美 USTR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무역 관련 차별적인 개인정보 암호화 규정이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차단 및 검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중

2. 우리기업 대응방향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상 규범들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므로 기업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 필요
 - 특히,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조치',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 '디지털세 도입'은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긴밀히 대응 필요

-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기업 차원에서 정부 및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 노력 필요
 - * 올해 12월로 예정된 일몰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몰 연장 불투명
 -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원칙 일몰시 디지털 무역이 축소되고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불이익 예상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기에 전자적 전송물 관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
 - 정부간 협상과는 별개로 기업 또한 다른 국가의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촉구서, 기업 성명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의견 반영 노력 필요
 - 전경련은 '19.12월 전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함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를 WTO에 전달한 바 있음

-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인력 정비 등 이행 강화 노력 필요
 - 앞서 살펴 보았듯, 최근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인한 과세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비 필요
 - 향후 디지털 기업은 물론 제조업, 금융, ICT, 서비스 등 전 산업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기업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인력 정비 필요
 - 정보보호 역량이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기업 브랜드 가치의 일부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
- (디지털세 부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내 재무·회계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거점 선정 전략의 재검토 필요
 - OECD 과세 원칙이 확정되는 경우 해외 이용자들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IT 기반 서비스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 대상 IT 제조업체 또한 디지털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
 - 해당 기업이 제품 판매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해왔다면 세금 총액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 변경에 따른 법률·조세·회계 자문 등 관련 행정비용 발생
 - OECD의 디지털세는 조세회피로 부당하게 이익을 축적해온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내 재무·회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 향후 해외거점 선정시 조세혜택보다는 시장성, 인프라 등 다른 요인을 더 중시할 필요
 - 한편, GAFG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 필적하는 BATH(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중국의 반응도 주시 필요

/끝/

작 성 자

▪ 통상지원팀 박영훈

Global Market Report 20-003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0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통상지원팀
(02-3460-7508)
I S B N | 979-11-6490-332-0
(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